
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, 자활지원센터, 상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, 시설폐쇄의 경우 「행정기본법」상의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(안 제31조제1항 및 제5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